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월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I.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